

# 예산총칙

## 2009년도 추경예산 제2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5,799,364	30,173,981
	일반회계	885,935,221	26,578,057
	특별회계	119,864,143	3,595,924
	기타특별회계	34,665,036	1,039,951
	주택사업특별회계	64,600	1,93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3,300,066	99,00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75,588	2,26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377,063	401,31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930,941	87,928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7,178,432	215,353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1,391,866	41,756
	수질개선특별회계	5,536,480	166,094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0	15,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10,000	9,300
	공기업특별회계	85,199,107	2,555,9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7,933,647	1,738,00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79,052	14,3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786,408	803,592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2,000백만 원으로 한다

제 5 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86,649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